

8. 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문의 효율적 연구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연구기구는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소로 한다. 연구소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설치) 연구기구의 설치에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3인 이상의 공동발의와 교야학부장 및 학과장의 추천 및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(2019.2.8.개정)(2020.4.21. 개정)

제4조(연구소)

① 연구원은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 자체의 상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③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임원)

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장 및 부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.

④ 연구소에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되,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연구소의 부서의 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

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본부행정기관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연구기구심의)

①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심의는 교무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② 교무위원회는 매2년마다 연구소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연구소의 존속여부를 심의 결정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연구업무를 시정 보완을 지시하고 연구업적 평가를 연구보조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·결산 등)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무입학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1. 연구소 운영보고서(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활동실적) 및 결산서(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)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업적을 수시로 교무입학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9조(재정) ① 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 (2011.7.1.

자구수정)(2021.6.22. 개정)

② 각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, 기타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,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대학교는 각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가 외부로부터 수혜하는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의 연구 간접경비를 징수한다.

제10조(경과조치) 기존 연구소는 본 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연구소 규정을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·첨부하여 재등록 신청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